



대우그룹, 옛 SK글로벌, SK해운, 옛 조양상선 사례 중심으로
부두진 역음



ACCOUNTING FRAUD!

분식회계는 회계사기다

(주)슈핑데일리

이 중 장 부(분식보고서)

-대우그룹, 옛SK글로벌, SK해운, 옛조양상선 사례 중심으로-

<서문>

IMF이후 대우그룹, 현대그룹과 SK그룹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허술한 회계제도와 수익가치보다는 매출기준의 금융권대출관행, 주가조작, 상속과 연계된 분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식회계의 방법은 매출액 과다계상과 이익조작 등이 주류를 이뤘고, 매출채권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금융감독원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장기업도 10개 가운데 2개 꼴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18개 기업을 무작위로 차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18.6%인 22개 기업이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장기업들의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무려 33.3%에서 2001년 14.3%, 2002년 15.7%, 2003년 5.1% 등으로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상장 기업들의 분식회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96.8%로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분식회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살기위해, 두 번째 기업의 존폐와는 별도로 특수 관계자(오너나 그 가족, 일가친척)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 등입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모든 분식회계가 투자자나 금융권 등을 기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관계자를 위한 분식회계가 가장 부도덕하다고 봅니다.

세계경영을 외쳤던 대우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이 터지면서 한국경제는 물론 대외신인도에도 악역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경우도 대표적인 해운기업인 현대상선이 대북송금문제와 관련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SK그룹

의 SK해운은 최대주주를 위해 부실한 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파산선고를 받은 조양상선은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거나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999년까지 1,7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결국 당시 해운기업 3위였던 조양상선은 이같은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권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3자매각도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자 매각시 부실회계부분이 드러나면 거래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파산법원도 분식회계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상선과 SK해운은 사상 유래없는 해운시황의 수혜를 받으면서 과거 분식회계의 멍에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회사가 분식회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양상선의 분식회계와 대우그룹, SK해운,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쉬핑데일리(www.sdaily.co.kr)에 게재된 기사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법원의 분식회계관련 판결문 등 관련당국의 조사(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분식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현대상선과 같은) 내용은 저자의 취재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하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저자는 해운업계의 분식사례를 토대로 내용을 기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인들이 “해운업계를 위주로 책이 만들어질 경우 ‘분식회계’가 해운업계만의 이야기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범위를 더욱 넓히고 원래 내용과는 다르게 가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해당그룹에 대해서는 내용전문을 보내주고 사실과 다른 점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변이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책은 해운업계를 포함한 분식회계를 한 그룹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한다면 이는 저자가 감내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왜 이런 책을 내는가”하고 묻는다면 “그럼 왜 분식을 했습니까”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식회계 사례를 통해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우리나라 경제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평소 아껴주신 해운업계 여러분들, 그리고 쉬핑데일리 가족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5월 부두진 배상

<저자>

부두진(夫斗珍)은 1964년 제주에서 출생, 해운전문지 '해사프레스' 편집장을 거쳐 2001년 인터넷 해운전문매체인 '쉬핑데일리(www.sdaily.co.kr)'를 설립, 대표기자로 활동하면서 현재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에 출입하고 있다.

-부산 해동고교

-동아대 영문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신문학 1년 수료

-해사프레스 편집장 역임

-쉬핑데일리 대표기자

목차

제1장 왜 분식회계를 하나

- 분식회계 용어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로 규정
- 전경련 조사보고..기업신인도 위해 분식회계
- 대주주(오너)를 위한 분식회계
- SK글로벌 분식사건 취재기사
- 부의 세습과도 관련

제2장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세계적인 분식회계

- 대우그룹, 22조9,000억원 분식회계
-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방법
- 계열사 대우전자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자동차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통신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중공업(현 대우조선해양)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대우중공업 분식 일람표
- 대법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3조원 추정 관련자 유죄 확정**

제3장 SK해운 및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례

- SK글로벌 특수관계자 위해 SK해운 끌어들이
- (그림)SK해운 손실발생 경로도
- SK해운 손실액 3,500억원..(주)아상의 단기차임금과 비슷
- SK해운 분식회계관련 당국의 조사경위 및 조치내용
- SK글로벌(SK네트웍스로 사명 변경)도 지적내용
- SK글로벌, 매출채권 부풀려
- SK해운 영향없나? <2003년 3월 31일 기사>
- SK글로벌 매출채권비율 96년 6.5%에서 97년 23.2%로 급증
- SK글로벌의 매출채권 추이표
- SK글로벌의 2001년회계연도 분식결산 내용
-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제4장 조양상선 분식회계

- 1999년까지 누적 1700억원 분식회계
- 조양상선의 대외용/실질 요약 대차대조표
- 조양상선의 대외용/실질 요약 손익계산서
- 유동성 부족현상 심화

- 경쟁회사 분석(표)
- 차입금 상환위해 자사선삭 매각
- 청산가치 추정결과

제5장 매출채권비율이 높으면 분식회계 의심하라

제6장 기타 분식회계 사례

- 코오롱TNS 분식회계 사례
- 충남방적의 분식회계 사례
- 제3장 하이닉스 분식회계
- 대한항공도 분식회계 ‘고해성사’

제7장 분식회계의 교훈

- 투명한 기업은 표류하지 않는다

제1장 왜 분식회계를 하나

- 분식회계 용어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로 규정
- 전경련 조사보고..기업신인도 위해 분식회계
- 대주주(오너)를 위한 분식회계
- SK글로벌 분식사건 취재기사
- 부의 세습과도 관련

사회적 지탄과 법정관리, 심지어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무릅쓰면서까지 분식회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기업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002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내부적 요인으로 '재무적 곤경과 경영자의 욕심이나 자만심',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나 감리 미흡'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회계장부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일수록 회계장부마저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LG경제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지난 2001년 4월경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IR협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를 위한 政策方向(粉飾會計 根絶對策을 中心으로)’라는 제하의 주제강연을 통해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단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외국에서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라는 표현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분식회계용어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로 규정

분식회계의 원인에 대해 우선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절차 미비, 외부감사의 효율성 미흡, 감리 등 감독시스템의 기반 취약, 분식회계에 대한 관대한 제재 등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었다.

또,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한계기업의 생존연장, 기업주의 부당이득 획득, 경영자의 경영실패 은폐 또는 성과보수의 확보 등 시장참여자의 경제적 동기에도 분식회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세무목적에 종속되어 인식되는 회계 관행,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4년 8월 발표한 '과거분식 해소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보고서에는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전경련조사보고서..기업신인도위해 분식회계

이 자료에 따르면 주요 상장·등록법인('03년말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 77개사 및 자산 2조원 미만 전경련 회원사 중 상장·등록법인 149개 등 총 226개 조사대상 중 129개 업체 응답)들의 대부분(응답업체의 85.6%)은 증권관련집단 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과거 분식회계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의 濫訴(남소)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기업들이 밝힌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관심이다. 가장 많이 답변된 분식회계 사유는 "기업경영 악화 표방에 따른 기업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와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차입비용 결정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것이었다. 또,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도 상당수 기업이 응답했다.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11.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차입비용 결정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19.4%
기업경영 악화 표방에 따른 기업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31.5%
관련 법규의 내용과 인지가 부족해서	10.5%
영업활동을 위한 좋은 재무제표가 필요해서	14.5%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7%
주주들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피하기 위해	0.8%
향후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6%
기타	0.8%

주) 상기 '2' 문항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 응답 가능 <전경련>

문제는 남소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과거분식회계를 해소하고자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수정공시할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48.3%)', '과거 분식회계 해소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27.5%)', '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 '과거 분식회계의 공시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대상 우려(10.8%)'등으로 인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과거분식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요(응답업체의 85.4%)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분식 해소방안으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의 제정방식(53.3%)'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감리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허용(31.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11.5%)'順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86.8%는 과거 분식회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응답업체의 13.2%는 '과거 분식회계의 공개적인 발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과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50.0%)' 등의 이유로 과거 분식 회계 해소방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조정기간은 3년(51.2%), 2년(31.7%), 1년(8.1%)의 順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들은 과거 분식회계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에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과거 분식회계 관련 특정기간 증권집단소송법 적용대상 제외(54.0%)', '과거 분식회계 해소사실의 공시의무 배제 및 감리 자제(27.7%)', '특정기간 비교재무제표 작성의 예외인정(9.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조항 삽입(8.8%)' 등이 제시됐다.

부실회계법인에 철퇴를 가하기 전에 분식회계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기업회계기준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업체의 89.1%는 '현행법상 분식회계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64.2%)를 분식회계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업체의 53.1%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이 불합리하거나 기업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중 43.4%가 이로 인해 향후에도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분식회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보유한 채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 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현행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하며,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후에는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면책 등 관련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오너)를 위한 분식회계도

전경련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발표자료에 적시된 분식을 하는 이유와는 다른 것도 있다. SK해운의 경우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다. 비상장회사이면서도 우량한 회사였던 SK해운은 대주주를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해운은 기업어음(CP)을 전량 소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SK해운의 경우는 다른 분식기업들이 회사의 생존차원에서 일정정도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대다수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또 다른 분식회계 배경도 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한 2003년 3월에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은 SK글로벌이 은행부채 잔액을 '제로'로 만드는 등 단순방법을 통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SK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SK그룹이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를 10년간 해왔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후 한국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파장이 매가톤급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각에서는 "SK만 그랬겠냐,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 또는 "SK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힘이 없어서.."라는 식의 동정론과 함께 재벌그룹의 상속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분식회계한 기업이 있다면 조용조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청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의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구조적 모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2세가 창업주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유산의 대부분이 주식과 자산이어서 상속에 따른 세금(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매각도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거나 부채와 이익 등을 줄이고 늘리는 등의 분식회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었다.

부의 세습과도 관련

부의 세습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 주식의 대규모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선친이 뼈 빠지게 만든 기업을 포기할 2세는 드물다는 이야기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창업주나 2세, 3세가 반드시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들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의 목인이 이러한 분식회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했었다. 창업주나 그 2세와 3세들도 무리한 유산상속보다는 기업(재벌)이 장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투명한 상속과 유능한 CEO에게 경영을 완전히 이양하는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저자의 생각이었다.

제2장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세계적인 분식회계

- 대우그룹, 22조9,000억원 분식회계
-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방법
- 계열사 대우전자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자동차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통신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계열사 대우중공업(현 대우조선해양)의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
- 대우중공업 분식 일람표
- 대법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3조원 추징 관련자 유죄 확정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1998년 7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업어음의 발행한도가 규제되고, 1998년 10월 28일 대우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1998년 10월 29일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은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Daewoo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한정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부실한 재무구조로 말미암아 대우그룹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1998년 12월 12일 제일은행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수정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우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은 1998년 12월 19일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1999년 7월초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김우중회장은 1999년 7월 19일 계열사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10조 원을 채권단에게 담보제공하고, 대우그룹을 자동차 부문의 전문그룹으로 재편했다. 계열사들의 계열을 분리하여 독립 법인화 하겠다는 내용의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어음 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대우그룹에게 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날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은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에 이르렀다.

이후 1999년 8월 26일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 개시됐고, 이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산을 실사했으며, 그 결과 1999년 10월 19일경 대우자동차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1999년 10월 26일경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인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실제 자산가액이 장부상의 자산가액과 합계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1999년 10월 27일경 대우 워크아웃 대상 핵심계열사의 실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의 가치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기사가, 1999년 10월 28일경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 주력 4개 계열사의 채권손실액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됐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999년 11월 4일 대우자동차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대우자동차의 1999년 8월말 현재 자산이 12조 9,359억 원, 부채가 18조 6,383억 원, 자본이 (-)5조 7,024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 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사들이 다음날인 1999년 11월 5일 각 일반신문에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2000년 9월 18일 대우자동차에게 김우중회장 등이 대우자동차의 제26기 및 제27기 재무제표를 각 작성하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대우그룹 경영진들에 대해 임 권고했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8일 최종부도를 맞았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지난 2000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대우 등 대우계열 12사의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분식회계금액은 (주)대우 14조 6,000억원 등 12개 계열사 총 22조 9,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주)대우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허위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책임이 있는 동사 임원중 21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고, 기타 **관련임직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회사의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표명하지 않은 1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2월의 증징계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고, 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 제외 3%의 징계**를 각각 조치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우계열 12사의 분식회계 조사·감리를 위한 특별반을 설치해 1999년 12월 9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회계감사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대우그룹, 22조9,000억원 분식회계

당시 당국이 밝힌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규모는

(주)대우 14조 6,000억원

대우자동차 3조 2,000억원

대우중공업 2조 1,000억원

대우전자 2조원,

대우통신 6,000억원 등 5개사가 22조 5,000억원 규모였다.

기타 7개 대우계열사가 4,000억원 등 전체적으로 22조 9,000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그룹 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단위: 조원)

구 분	자기자본(99.8)		실사차이 ^(주1)	분식회계금액 ^(주2)
	회사제시	실사		
(주)대 우	2.6	-17.4	20.0	14.6
대우자동차	5.1	-6.1	11.2	3.2
대우중공업	3.1	1.0	2.1	2.1
대 우 전자	0.7	-3.0	3.7	2.0
대 우 통신	0.3	-0.9	1.2	0.6
소 계	11.8	-26.4	38.2	22.5
기타 7사	2.5	-2.2	4.7	0.4
총계	14.3	-28.6	42.9	22.9

(주1) : `99.8월말 기준, (주2) : `98.12월말 기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방법

대우계열사들은 어떻게 22.9조원규모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실시했을까?

- 차입금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 등 이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자인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금액이 0.5조원을 초과하는 (주)대우 등 5개사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인지정(9개사) 등을 조치했다.

또, 관련회사 임원중 21명을 외감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기타임직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조치종류		명수	내용
고발 등 조치	고발(회사)	5사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고발(임원)	21명	- 상기 5사 ·대표이사급 : 9명 ·회계담당임원급 : 12명
	수사기관통보 (임직원)	20명	- 상기 5사 ·임원급 : 7명 ·부장급 : 13명
기타 조치	감사인지정 ^(주3)	9사	(주)대우 등 9사 (1년 - 3년)

(주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1심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우의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004년 8월 19일에 있었던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1심 판결내용을 재구성한다.

대우전자의 1997 회계연도의 분식결산

<사건명 2002가합79725, 대우전자 분식회계 전말>

대우전자는 1998년 2월 초순경 제27기 사업연도에 대해 가결산한 결과 자산이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가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 1조 6,701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당시 대우전자의 최고경영자는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으로부터 대우전자의 당기순이익을 약 410억 원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재무담당 전무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수량보다 과다 표시하고, 기매출(중계무역)된 상품 및 기통관 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 6,037억 원을 과대계상했다.

또,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6,607억 원(당기발생분 1,832억 원)을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고, 이와 같이 가공계상된 매출채권 6,607억 원과 실존의 매출채권 465억 원을 어음차입금(기업어음할인 등) 7,072억 원과 상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채권 465억 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어 1997년에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1,399억 원 및 매출채권 7,072억 원(가공의 매출채권 6,607억 원과 실존의 매출채권 465억 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 원(기업어음할인 8,081억 원, 무역어음할인 390억 원)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부도가 발생되어 장기 미회수되고 있는 국내거래처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중 860억 원(당기발생분 111억 원)은 담보설정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860억 원을 과소계상했다.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현업부서에서 불용·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184억 원을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73억 원을 장부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자산 1,920억 원을 과대계상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수년 전부터 1997년 말까지 모든 직원(경리·결산 관련부서 소속 직원 제외)의 실제 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총당금을 293억 원 과소 계상해 총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을 허위계상함으로써, 자산이 4조 636억 1,300만 원, 당기순이익이 414억 7,5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우전자는 1998년 3월31일 이같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제27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시 ‘세동회계법인’(나중에 안진에 흡수합병)으로부터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했다.

대우전자는 1998 회계연도에도 분식결산을 실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우전자 1998 회계연도의 분식결산

대우전자는 1999년 3월 20일 제28기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자산 3조 9,056억 1,000만 원, 부채 4조 8,379억 4,2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 1조 9,920억 7,5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우전자의 대표 등은 김우중으로부터 당기 순이익을 약 50억 원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우전자는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재고자산 6,709억 원(전기 이전분 6,037억 원)을 과대계상했다.

1998년에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1,689억 원을 가공의 외화외상매출금(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정대체하고, 1997년 말의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 원을 1998년 초(차입금결제일)의 부채로 환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가공의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가공 계상된 외화외상매출금 중 311억 원을 타 자산항목(장·단기대여금, 미착시설재)으로 계정대체함으로써 매출채권을 9,384억 원(전기 이전분 465억 원 공제) 과대계상했다.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1,061억 원 과소계상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2,256억 원 과대계상했다.

1998년에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 251억 원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방법으로 장단기대여금 251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제2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305억 원 과소계상해, 총 1조 9,966억 5,900만 원 상당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자산이 5조 8,717억 4,400만 원, 당기순이익이 45억 8,4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우전자는 1999년 3월31일 이같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제28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문의 내용중 일부다.(사건명 2002가합79725 손해배상(기), 2004년 11월 19일 판결)

대우자동차의 1997년 회계연도 분식결산

대우그룹이 1983년경 신진자동차를 인수해 대우자동차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무리한 사업확장,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과도한 설비투자, 동종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수익 감소, 대우그룹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무리한 해외투자 등으로 1996년경부터 자기자본이 잠식됐다.

이어 1997년도에는 국내외 외환 위기로 야기된 고금리와 원화 가치의 약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수년간 계속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자, 김우중회장 등은 대우그룹의 대외 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의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 등을 우려한 나머지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누적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우자동차 최고 경영진은 1997년 10월 17일경 관련자들에게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은 3,000억 원 이상으로 분식회계를 하라"라는 김우중의 지침을 전달하면서 "약 3,0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결산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했다.

당시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대우자동차가 분식회계흐름으로, 당시 김우중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2005년 4월 있었던 최종 재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됐다.

“김우중은 1998년 1월 17일경 대우자동차 임원들에게 "대우중공업에 500억 원을 회계분식하여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당시 대우자동차 경영진은 1998년 2월 14일경 김우중에게 당기순이익을 약 2,500억 원 정도에 맞추어 분식한 1997년도 결산 초안을 보고했으나, 김우중으로부터 "당기순이익을 3,000억 원 상당 내라"라는 지침을 다시 받는 등, 김우중은 당시 대우자동차 경영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분식 규모 및 계열사와의 회계조정 등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실무자회의를 열어 그들의 토론을 거쳐 회계분식을 한 후 이를 취합하여 김우중 등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같은 분식회계 결과, 대우자동차의 경우 사실은 자산은 9조 999억 원, 부채는 9조 7,493억 원, 자기자본은 (-)6,4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2,80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산은 8조 5,134억 원, 부채는 7조 4,741억 원, 자기자본은 1조 394억 원, 당기순이익은 2,512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8년 3월 12일 이사회 의결 및 1998년 3월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998년 3월31일 매일경제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해 허위의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사건명 2002가합79718 손해배상(기)는 대우통신과 관련된 1심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다. (2004년 6월)

대우통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

대우통신은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1994 회계연도에 이미 1,000억 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극도로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 데다, 금융기관이 대우통신의 위와 같은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 신용대출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이르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여 대우통신의 채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이미 대우통신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대우통신은 제31기(199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1998년 2월초경 1997년 가결산 절차를 마감한 결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을 80억 원 상당으로, 부채비율을 350% 상당으로 조정했다.

분식회계는 사업장별 매출액, 원가율, 이익을 조정하는 등 분식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하달받아 시행됐다.

재고자산 계정의 경우, 실제 외부에 판매되거나 제품생산에 투입되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원재료 : 2,169억 원, 제품 : 312억 원, 상품 : 965억 원)을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누적하여 장부에 계상해 결과적으로 재고자산 3,446억 원, 당기순이익 1,061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2,385억 원을 과소계상했다.

매출채권 계정의 경우, 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채권(현재가치할인자금 해당분) 및 당기순이익 19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② 매출채권 138억 원에 대한 계정을 장기매출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③ 금융기관에 네고(NEGO)한 매출채권 중 거래처가 만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도상태에 있는 매출채권과 만기가 연장된 매출채권을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채권 및 단기차입금 326억 원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자산성이 없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연구개발비 196억 원, 당기순이익 98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98억 원을 과소계상해, 사실은 자산은 1조 1,287억 원, 부채는 1조 1,522억 원, 자본은 (-)235억 원, 당기순이익은 (-)3,388억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1조 4,753억 원, 부채는 1조 1,522억 원, 자기자본은 3,230억 원, 당기순이익은 77억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우중공업(현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분식회계사건(사건명 2000가합78872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04년 7월 27일)

대우중공업의 1997년 회계연도 분식결산

구 대우중공업은 1998년 1월 말경 제35기 사업연도(1997 회계연도) 임시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9조 4,761억 9,800만 원, 부채가 9조 5,458억 9,8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697억 원으로 완전 잠식됨과 더불어 당기순손실이 2조 8,023억 4,600만 원으로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중공업 당시 경영진들은 구 대우중공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구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940억 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각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모를 조선해양부문에는 5,374억 원으로, 종합기계 부문에는 3,685억 원으로, 버스부문에는 389억 원으로, 상용차부문에는 339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는 1,098억 원으로, 총괄 본사부문에는 마이너스 9,939억 원으로 각각 배정할 것을 지시받았다.

당시 실제 부채가 9조 5458억원임에도, 5661억원의 부채를 줄여 8조 9797억원인 것으로 과소계상하고, 실제 자기자본은 -697억 원임에도, 가공자본 등 2조 8,970억 7,8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이 2조 8,273억 7,800만 원에 이르게 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에서 947억 3,200만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위같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제35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1998년 3월 2일 조선일보를 통해 공고한 후, 1998년 3월 31일 경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이를 공시했다.

대우중공업 1998년 회계연도 분식결산

구 대우중공업은 1999년 1월 말경 1998 회계연도 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13조 511억 1,000만 원, 부채가 11조 1,753억 100만 원으로 자본이 1조 8,758억 9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1조 9,618억 3,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자 분식회계를 시행했다.

당시 경영진들은 김우중에게 보고해 그로부터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1,610억 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각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모를 조선해양부문에는 2,762억 원으로, 종합기계부문에는 마이너스 3,499억 원으로, 버스부문에는 마이너스 337억 원으로, 상용차부문에는 마이너스 314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는 1,255억 원으로, 총괄 본사부문에는 1,750억 원으로 각 배정한 후 각 사업부문별 경리부장들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부채가 11조 1753억 원임에도 부채를 9,398억원 가량 줄여 10조 2343억원으로 계산하고, 실제자본은 1조 8758억원임에도, 가공자본 등을 2조 1,234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이 3조 9,992억 6,300만 원에 이르게 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에서 1,616억 1,700만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우중공업은 이같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제36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22일 동아일보를 통해 이를 공고한 후, 1999년 3월 3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이를 공시했다.

대우중공업 분식일람표(제35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계정과목	분식내용	분식효과
1. 조선해양 부문	장기매출 채권	1980년대 중반 조선경기 불황때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외화장기 매출채권 미화 294,004,109.13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 금액 4,098억 2,300만 원)를 매년 자산으로 계상하여 1997년 도로 이월되어 왔으나 위 채권은 관련된 선박계약 1980년대 후 반에 이미 종결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상각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산인 장기매출채권으로 계상	순이익 4,098억 2,300만 원 과대계상
2.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1980년대 후반 조선경기 불황 때부터 완성된 선박의 제조원가 를 진행중인 선박의 제조원가로 대체하여 현재의 비용을 장래로 이연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늘여 1997년 말 현재 매출채권 5,784억 3,9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1997년 말 현재 조선해양 부문이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선수금 채무 2,007억 500만 원을 같은 금액 상당의 가공 매출채권과 상계하 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선수금 채무를 줄여 과소계상	순이익 7,79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3.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1997. 3.경 주식회사 대우를 수출자로 하여 셸(shell) 선주에게 인도한 선박대금 미화 1억 4,0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 환산금액 1,981억 2,800만 원)를 선주로부터 수금하여 그 중 미화 1억 1,2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1,585억 200만 원)를 주식회사 대우에 빌려주었음에도 마치 선주로부터 선박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전액을 매출채권으로 계 상하고 주식회사 대우에 빌려준 채권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 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 1,981억 2,800만 원을 과대계상하 고, 관계회사 대여금 1,585억 2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396억 2,6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5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계정과목	분식내용	분식효과
8. 상용차 부분	재고자산	1996년 경 종합기계부문에서 가공 재고자산 1,678억 9,700만 원 상당을 대체받아 관리해 오면서, 1997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85억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재공품 수량을 늘여 가공 재공품 1,933억 8,6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	순이익 1,933억 8,600만 원 과대계상
9. 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많아져 분식이 노출될 염려가 있자 재고자산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4개의 가공 건설 중인 자산 프로젝트를 만들어 1996년 말까지 이월 관리해 온 가공 건설중인 자산에 1997년 말 추가로 건설중인 자산 1,284억 8,600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건설자금이 자를 추가 계상하고, 기계장치 1,435억 3,000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 1997년 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 5,614억 200만 원 및 기계장치 1363억 5,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977억 5,500만 원 과대계상
10. 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1994. 12. 1. 대우자동차로부터 버스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생산기술료 명목으로 380억 원을 환매조건부로 지급하였으면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1996년 말까지 건설자금이 70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997년에도 건설자금이 52억 9,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1997년 말 현재 합계 123억 2,1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과대계상	순이익 123억 2,100만 원 과대계상
11. 종합기계 부분	이연자산	연구개발비는 일단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 간 균등상각하여야 함에도,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하여 프로젝트 완료 연도까지 상각하지 아니함으로써 1996년도까지 상각되었어야 할 연구개발비 447억 2,900만 원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1997년으로 이월되었고, 1997년에 상각되어야 할 연구개발비 179억 8,400만 원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추가 계상함으로써 연구소 재공품 627억 1,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27억 1,3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5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계정과목	분식내용	분식효과
12.버스부문	이연자산	1996년까지 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매출원가를 줄이는 한편 같은 금액 상당의 선급금(자산)으로 계상되어 오던 35억 5,600만 원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1997년경 연구개발비 관련 이연자산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하여 7억 1,100만원 상당 연구개발비 상각 명목으로 비용처리함으로써 연구개발비 관련 이연자산 28억 4,500만 원 과대계상	순이익 28억 4,500만 원 과대계상
13.조선해양 부분	부외부채	1980년대 후반 주식회사 대우의 영국 계좌인 비에프씨(BFC)로부터 선박 수주 관련 경비 및 선가감액분을 지원받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7년 말 현재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하여 3,654억 2,700만 원 상당의 부외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함	순이익 3,654억 2,700만 원 과대계상
소계		순이익 3,654억 2,700만 원 과대계상	
합계		순이익 2조 8,970억 7,8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6기 회계연도)<별지 2-2>

사업과목	계정과목	분식내용	분식효과
1.조선해양 부분	장기매출 채권	80년대 중반 조선경기 불황때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이월관리하여 온 외화장기매출채권 미화 289,586,589.95달러 (1998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 3,497억 6,200만 원)이 매년 자산으로 계상되어 이월되어 왔으나, 위 채권은 관련된 선박계약이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종결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상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산인 매출채권으로 계상	순이익 3,497억 6,200만 원 과대계상
2.조선해양 부분	매출채권	80년대 후반 조선경기 불황 때부터 완성된 선박의 제조원가를 진행중인 선박의 제조원가로 대체하여 현재의 비용을 장래로 이연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늘여 1998년 말 현재 매출채권 3,796억 6,1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1997년 말 현재 조선해양부분이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선수금 채무금31억 4,200만원을 같은 금액 상당의 가공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선수금 채무를 줄여 과소계상	순이익 3,828억 300만 원 과대계상
3.조선해양 부분	매출채권	1997년 수금되었으나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바 있는 셸(shell)선박대금 미화 1억 4,000만불이 1998년도로 이월되었고, 1998년에 추가로 선주(I.C.B)로부터 선박 수출대금 미화 488만 달러(1998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 69억 1,800만 원)을 감액당하였음에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1997년 셸(shell)선주로부터 수금한 위 미화 1억 4,000만 달러 중 주식회사 대우에 빌려주고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관계회사대여금 미화 1억 1,200만 달러가 1998년도로 이월되어 1998년 말 현재 매출채권 미화 1억 4,488만 달러(1998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 844억 1,1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관계회사대여금 미화 1억 1,200만 달러(1998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 446억 8,800만 원) 과소계상	순이익 397억 2,3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6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계정과목	분식내용	분식효과
4.조선해양 부분	매출채권	관계회사 대여금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우를 수출자로 하여 선박을 수출하고 선주로부터 교부받은 선박대금을 주식회사 대우에 빌려 주고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화매출채권을 계상함으로써 1,275억 2,500만 원 상당의 외화매출채권(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포함)을 과대계상하고, 관계회사 대여금 1,740억 8,7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465억 6,200만 원 과소계상
5.종합기계 부분	재고자산	1997년으로부터 1,885억 4,000만 원 상당의 과대계상된 재공품이 이월되었고, 1998년 상용차부문으로부터 가공 재공품 1,678억 9,700만 원을 부문간 대체받은 후 그 중 3,030억 9,500만 원 상당을 매출원가, 연구개발비 상각 등으로 비용화하여 1998년 말 현재 재공품 533억 4,200만 원 과대계상	순이익 533억 4,200만 원 과대계상
6.국민차 부분	재고자산	1998년 말 현재 실제 제품이 413억 원 상당, 실제 재공품이 82억 원 상당, 실제 원재료가 210억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KD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말 및 기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제품을 90억 8,300만 원 상당, 재공품을 100억 원 상당, 원재료를 679억 9,700만 원 상당 과대계상	순이익 870억 8,000만 원 과대계상
7.버스부문	재고자산	1998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148억 원 상당, 실제 원재료가 74억 원 상당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재공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말 및 기말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재공품을 646억 8,500만 원 상당, 원재료를 294억 5,900만 원 상당 과대계상	순이익 94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6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과목계정	분식내용	분식효과
8.상용차 부분	재고자산	1997년으로부터 이월된 재공품 과대계상분 1,933억 8,600만 원 중 1996년경 종합기계부문에서 대체받아 관리해 오던 가공 재고자산 1,678억 9,700만 원 상당을 종합기계부문으로 부문간 대체시킨 후 1998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104억 원 상당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재공품 수량을 부풀려 재공품 31억 4,100만 원 상당을 추가 과대계상함으로써 가공 재공품 286억 3,0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	순이익 286억 3,000만 원 과대계상
9.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많아져 분식이 노출될 염려가 있자 재고자산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4개의 가공 건설중인 자산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1997년 말 까지 이월관리해 온 가공 건설중인 자산 5,614억 200만 원 상당 및 기계장치 1,363억 5,300만 원에 1998년 추가로 건설 자금이자 183억 5,6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기계장치에 219억 400만 원 상당 감가상각하고 건설중인 자산 1,500억 원을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1998년 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 4,297억 5,800만 원 및 기계장치 2,644억 4,9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942억 700만 원 과대계상
10.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1994. 12. 1. 대우자동차로부터 버스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생산기술료 명목으로 380억 원을 환매조건부로 지급하였으면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1997년 말까지 건설자금이자 123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998년에도 건설자금이자 73억 2,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1998년 말 현재 합계 금196억 4,300만 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순이익 196억 4,300만 원 과대계상

분식일람표(제36기 회계연도)

사업부문	과목계정	분식내용	분식효과
11.종합기계 부분	이연자산	연구개발비는 일단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간 균등상각하여야 함에도,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연구소 제공품)으로 계상한 후 프로젝트 완료 연도까지 상각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년도까지 상각되었어야 할 연구개발비 627억 1,300만 원이 상각되지 아니하고 연구소 제공품으로 계상되어 1998년으로 이월되었고, 1998년 중 상각되었어야 할 연구개발비 132억 800만 원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제공품으로 추가 계상함으로써 연구소 제공품 759억 2,100만 원 (=627억 1,300만 원 + 132억 8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759억 2,100만 원 과대계상
12.버스부문	이연자산	1996년까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오다가 1997년에 연구개발비로 대체된 28억 4,500만 원 상당이 1998년도로 이월되었고, 1998년도에 이에 대하여 7억 1,100만 원 상당 연구개발비 상각 명목으로 비용처리함으로써 연구개발비 관련 이연자산 21억 3,400만 원 과대계상	순이익 21억 3,400만 원 과대계상
13.조선해양 부분	매출채권 및 선수금	김우중으로부터 대우중공업 조선해양부문의 부채비율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317.6%에 달하던 1997년도 부채비율을 1998년에는 255.9%로 낮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우를 수출자로 하여 선박을 수출하면서 선주가 달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매출채권 5,950억 8,400만 원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선수금 채무를 상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 및 선수금 채무를 각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에 영향없음
14.조선해양 부분	부외부채	1980년대 후반 주식회사 대우의 영국 계좌인 비에프씨(BFC)로부터 선박 수주 관련 경비 및 선가감액분을 지원받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8년 말 현재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하여 금3,426억 2,700만 원 상당의 부외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부채로 미계상	순이익 3,426억 2,700만 원 과대계상

대법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3조원 추징 관련자 유죄 확정

대우그룹은 결국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005년 4월 29일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대우사태가 발생한 1999년 10월 중국 자동차부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추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사실상 사건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이날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불법외환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주)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병주 (주)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해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물렸던 항소심 단계의 추징금 24조 3,558억여원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감안해 1조 3,200억여원을 감액한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대우차 재무제표 작성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우중 등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공모해 금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3장 SK해운 및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례

- SK글로벌 특수관계자 위해 SK해운 끌어들이
- (그림)SK해운 손실발생 경로도
- SK해운 손실액 3,500억원..(주)아상의 단기차임금과 비슷
- SK해운 분식회계과런 당국의 조사경위 및 조치내용
- SK글로벌(SK네트웍스로 사명 변경)도 지적내용
- SK글로벌, 매출채권 부풀려
- SK해운 영향없나? <2003년 3월 31일 기사>
- SK글로벌 매출채권비율 96년 6.5%에서 97년 23.2%로 급증
- SK글로벌의 매출채권 추이표
- SK글로벌의 2001년회계연도 분식결산 내용

SK해운이 2003년 겪었던 유동성위기사태는 2대주주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SK해운의 분식회계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SK해운에서 폐기한 기업어음(CP)이 SK글로벌의 변칙 지원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물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SK해운은 2002년 매출 1조 1,093억원과 77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1,869억원의 경상손실과 -2,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상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2002년 경상손실은 외화환산이익 1,800억원을 감안하면 -3,600억원에 달한 셈이다. 이같은 SK해운의 경상손실규모는 사상 최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SK해운의 분식회계는 2대주주인 SK글로벌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SK해운이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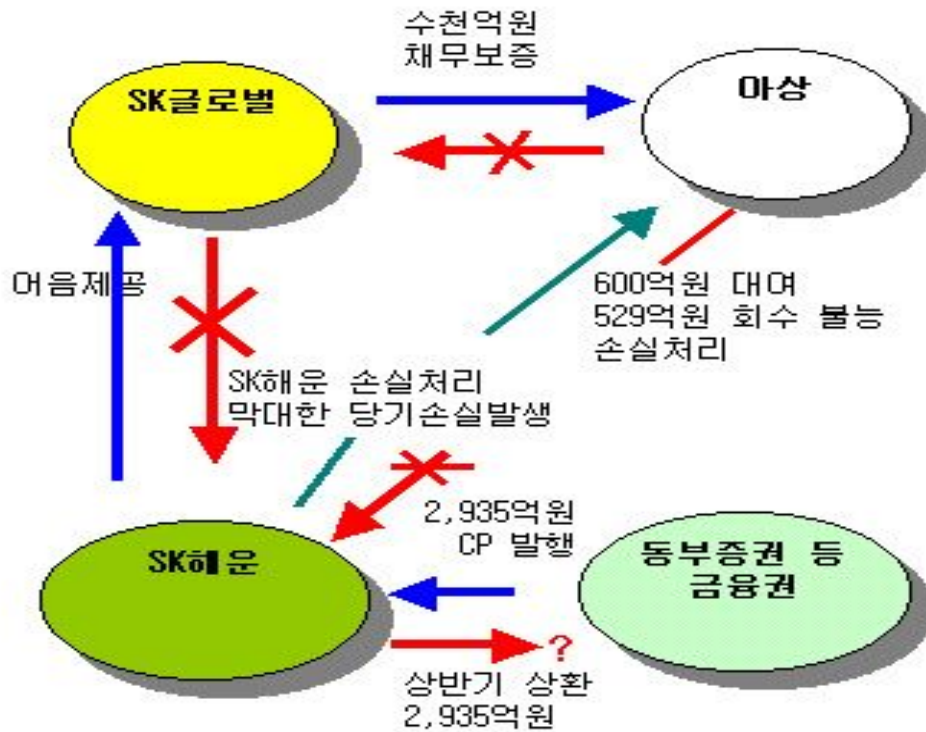
당시 금융감독원과 언론들에 따르면 SK해운이 전량 폐기한 CP 29장은 SK해운이 SK글로벌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SK글로벌에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글로벌은 이 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렸다. 즉 SK해운은 CP를 발행하고, 이를 SK글로벌이 사주고 SK해운이 그 돈으로 (주)아상(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의 채무를 갚은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은 이에 앞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자인 원목기업 (주)아상과 수출 거래를 해오다가 지난 80년대 들어 원목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안게 됐고, 대외적인 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SK해운을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

SK글로벌 특수관계자 위해 SK해운 끌어들이

(주)아상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먼 인척이 운영하는 합판회사로 지난 99년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9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상은 지난 1999년의 단기차입금규모가 중앙중금 등으로부터 연리 7.5-13%인 3,550억에 달하는 등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현재 SK해운의 유동성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CP 2,935억원과 아상에게 대여한 대여금 600억원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SK해운 손실발생 경로도



SK해운 4년간 요약 손익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매출액	10,611	14,173	15,255	11,093
영업이익	433	1,047	1,337	773
외화환산이익	731	918	416	1,887
외화환산손실	262	2,293	1,073	684
경상이익	770	-1,041	-152	-1,869
당기순이익	602	-800	-173	-2,200

결국 이번 사태는 SK글로벌이 자사의 채무를 계열사인 SK해운에게 부담(부담액 2,935억원 상당)지웠다가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SK해운은 SK글로벌에게 빌려준 CP를 대손처리한 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대규모 당기손실이 발생했고, 여기서 SK글로벌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CP 전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해운 손실액 3,500억원, (주)아상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 때문에 SK해운은 CP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된 2,935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을 안게 됐고, 올해 상반기에 CP 상황이 집중되면서 유동성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었다.

SK해운은 이와 관련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Free Cash)과 일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차입금의 만기연장(Roll Over) 및 SK와 SKC로부터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이러한 막대한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했었다.

SK해운의 분식회계는 시사하는 것이 많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재벌 지배 구조 하에서 건설한 해운회사가 피해를 본 사례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실제로 SK해운사태를 되짚어보면 SK해운은 자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SK글로벌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음으로서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 24일 SK해운(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이다.

당국의 조사경위 및 조치

□ 조사경위

97년 이후 법인세 자진납부실적이 미미했고,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법인세 일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2003년 6월 20일 조사 착수.

□ 조사결과

조사결과 총 탈루 소득금액 4,065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등 제세 1,499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이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액은 1,408억원이며, 이에 대한 포탈세액은 393억원임.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03년 10월 22일 SK해운(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행위자인 대표이사 손길승과 이승권을 함께 고발조치함.

세무조사결과 일부 법인자금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적출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한편,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는 지난 2004년 3월 SK해운에 1,434억원을 출자했다. SK는 이번 출자로 지분율이 72.13%로 증가했고, SK해운은 유동성 문제가 다소 완화됐다. SK해운은 200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4.8% 증가한 1조 6,72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1,154억원, 경상이익 4,462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722억원 적자에서 3,532억원을 기록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회사측은 이같은 높은 매출액 확대와 흑자전환 배경에 대해 "원유선 신규선박 도입과 해운시황 호조 및 외화환산이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글로벌(SK네트웍스주식회사로 사명 변경)도 제재받아

현 SK네트웍스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당시 SK 글로벌도 무사할 수는 없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03년 8월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SK글로벌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지적사항

1. 외화외상매입금 누락 등

- ① 회수된 매출채권을 미회수된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가공 매출채권을 계상
- ② 부도 발생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③ 거래협력업체 보증채무에 대한 대지급손실을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매입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은폐한 후 가공의 예금으로 계상
- ④ 과거의 매출원가율과 추세를 맞추기 위하여 재고수불부의 합계표 출고란을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소계상
- ⑤ 기한부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물품 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 등을 누락

2.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

-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
- ②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과 매출채권은 우발손실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주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외부감사 방해

- 해외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조회서를 위조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거나, 실제 채무자가 아닌 해외현지법인과 통정하여 위조된 조회서를 받아 감사인에게 제출했으며, 금융기관에 신용장 이용잔액 대신 개설한도만 기재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조회서를 직접 회수한 후 조회서를 재작성 또는 조회서에 첨부된 세부명세의 일부를 제거하여 채무잔액을 누락시킨 후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우편으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

[1999.12.31]

※ 당기순이익 356억원 → △ 1760억원
 자기자본 2조9167억원 → 1조 5986억원

[2000.12.31]

※ 당기순이익 374억원 → △ 4467억원
 자기자본 2조 4128억원 → 6106억원

[2001.12.31]

※ 당기순이익 △ 1310억원 → △ 3264억원
 자기자본 2조 2208억원 → 2조 2324억원

○ 조치사항

1.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2. 감사인지정 3년
3. 임원해임권고(대표이사)
 (단, 의결일 현재 사임이 확정된 경우 해임권고 상당)
4. 임원해임권고(상당)
 (前대표이사 및 前담당임원)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SK글로벌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검찰이 파악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대우그룹의 23조~40조원, 기아그룹 4조5,000억원에 이은 사상 3번째 규모이며, 동아건설 한보그룹의 7,000여억원 보다 배나 많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부도위기 상태에서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SK글로벌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SK글로벌의 2001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SK글로벌의 매출액과 손익은 각각 18조원,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매출채권 등 수익성 항목에서 수천억원씩이 부풀려진 허위자료로, 실제 분식 금액을 일시에 털어낼 경우 적자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당시 분석이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방법은 가공채권 계상이었는데, SK글로벌은 2001년말 결산 당시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채권 1,50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포함시켜 매출채권을 부풀렸다.

SK글로벌, 매출채권 부풀려

또 미국 유럽 홍콩 등지의 해외 법인에 출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 법인의 순자산을 부풀린 뒤 2,400억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K글로벌 매출채권 추이를 조사해본 결과 SK글로벌의 매출채권은 1996년과 1997년 6%대에서 1998년에는 무려 2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아마 1998년에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매출액이 14조 5,325억여원이었지만, 매출채권이 3조 3,880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SK글로벌의 매출채권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실을 수습해가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매출채권의 매출액대비 비율이 20%가 넘을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저자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이 터지면서 SK해운과의 연관관계를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SK해운 영향없나? <2003년 3월 31일 시점 작성>

분식회계로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SK글로벌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31일 '한정의견'을 제시함에 SK글로벌사태가 SK그룹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K글로벌은 이번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예정이지만, 외부감사인이 SK글로벌에 대해 5,000억원을 추가로 분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앞으로 SK글로벌은 물론 SK해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글로벌은 SK해운의 지분 33%를 소유한 2대 주주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SK해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SK해운측은 미묘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SK해운에 대해 SK글로벌은 2001년 12월말 기준 SK(주)의 35.37%에 이어 33.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K글로벌문제가 SK해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은 크게 2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SK글로벌이 SK해운의 차입금 등에 지급보증선 경우와 또 한가지는 SK해운이 SK글로벌의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경우다.

전자의 경우는 채권자들이 보증처를 SK글로벌에서 SK(주) 등 다른 계열사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처만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SK글로벌이 SK해운에 지급보증을 선 규모는 1,159만 9,613달러로 규모에 비해 그리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SK해운이 지급보증한 규모도 큰 규모는 아니고, SK글로벌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취평데일리 2003/03/31>

SK글로벌 매출채권비율 96년 6.5%에서 97년 23.2%로 급등

SK글로벌의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96년과 97년 6%대였던 매출액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98년 23.3%로 급증했다. 이는 98년이전의 과거분식을 98년도에 털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SK글로벌 매출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채권비율
1996년	13조 6137억원	8294억원	6.1
1997년	12조 6495억원	8257억원	6.5
1998년	14조5325억원	3조3880억원	23.3
1999년	18조363억원	1조3521억원	7.5
2000년	14조 2067억원	538억원	0.4
2001년	7조6725억원	32억원	0.4
2002년	7조2323억원	884억원	12.2
2003년	5조9974억원	720억원	12.0
2004년	4조6873억원	7868만원	0.0

SK네트웍스 분식회계관련 1심법원의 판결문중 일부를 요약했다.<사건명 2004가합 7359 손해배상(기). 2005년 3월 10일 판결선고>

SK네트웍스의 2001 회계연도 분식결산

SK네트웍스는 1976년 11월 22일부터 종합상사 체제로 출범하여 수출증대에 주력하면서 사업 영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와 수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 등으로 부실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상사의 특성상 매출이익은 적는데 비해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에 따른 부실자산이 빈번하게 발생해 재무구조가 부실해졌다.

SK네트웍스의 임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조건이 악화되거나 중단될 것 등을 우려한 나머지 SK그룹 차원에서SK네트웍스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무를 숨기고 이익잉여금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분식결산을 계속했고, 그 결과SK네트웍스는 2000년 이미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SK네트웍스의 대표이사이던 손길승, 김승정은 피고 SK네트웍스의 2001 회계연도(제49기) 가결산 결과 자산이 약 6조 4,979억 원, 부채가 약 5조 8,358억 원이고 당기순손실 약 2,537억 원이 발생했는데도, 매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처럼 약 1,498억 원의 가공매출채권을 만들고 약 447억 원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해외법인들의 지분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손실 2,501억 원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했으며, 지급보증 및 기타약정 사항란에 채무잔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보증한도만 기재된 회계감사용 은행조회서를 이용해 약 1조 1,811억원의 외화외상매입채무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당기순손실 약 1,226억 원을 과소계상해 피고 SK 네트워크의 200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시했다.

이와 관련 2004년 3월 참여연대측은 SK해운 이사회측에게 손길승 당시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전 감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주주대표소송 추진

당시 참여연대가 SK해운이사회측에 전달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82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귀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는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은 1998년 5월경부터 과거 계열사였던 (주)아상에 이사회 결의 없이 귀사의 자금 2,492억원을 불법지원한 바 있으며, 그 후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수익누락 및 가공비용계상 등의 방식으로 마치 귀사가 위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분식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 의해 손길승 SK해운 전 대표이사는 귀사의 자금 7,884억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유출하여 선물옵션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거액을 손실을 초래하였고, 그 자금의 일부를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음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귀사의 감사였던 김창근 SK그룹 전 구조본부장도 손길승 전 회장과 공모하여 귀사에서 불법유출한 자금을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해왔음도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길승 전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감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귀사에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원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 의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손길승 전 대표이사는 앞에서 언급한 (주)아상에 대한 불법자금지원 및 대여금 미회수 은폐와 7,800여억원의 불법자금유출을 시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사의 이사회가 손길승 전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귀사의 이사회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손길승 전 대표이사 및 김창근

전 감사 등의 회사발전 기여 공로 등을 운운하며 손실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지연한다면, 이는 귀사 이사회가 비록 새로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사의 이사회가 손실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4월 10일 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귀사 이사회가 손실회복을 위한 실천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연대는 귀사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를 통해서 또는 SK(주)의 주주들을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사 이사회에 신속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

그러나 참여연대는 필요한 주주를 모으지 못해 대표소송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4장 조양상선 분식회계

- 1999년까지 누적 1700억원 분식회계
- 조양상선의 대외용/실질 요약 대차대조표
- 조양상선의 대외용/실질 요약 손익계산서
- 유동성 부족현상 심화
- 경쟁회사 분석(표)
- 차입금 상환위해 자사선삭 매각
- 청산가치 추정결과

앞선 두 건의 경우 모기업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하고, 현재 전기오류 수정 및 모기업의 출자 등의 자구책과 해운시황 호조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만큼, 향후 투명 경영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한때 국내 3대 선사로서 해운업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조양상선의 몰락은 근년들어 해운시황의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한 때 세계 30위권에 랭크됐던 조양상선그룹의 조양상선이 허망하게 무너진 원인도 바로 분식회계에 있었다. 이 회사는 1991년 세계일주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해운시황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지 않고 금융권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적인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처리 및 비용의 누락처리를 통해 분식회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까지 누적된 분식금액은 약 1,7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컨설팅 및 회사정리절차 진행을 담당했던 모 회계법인은 분식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 ▶ 배당 및 상여처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따른 세무추징
- ▶ 채권단 실사 결과 분식 및 부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로부터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예상
- ▶ 분식결과 가공자산중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경영자(대주주)에 대한 배당 및 상여로 간주하여 거액의 세무추징이 예상
- ▶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식결과는 불공정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 가능
- ▶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처분 받아 회사의 세무부담 증가
- ▶ 구조조정 대상회사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문제제기
- ▶ 외자유치와 매각이 진행될 경우 회사와 관련된 분식이 발견시 계약자로부터 계약철회와 경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가능
- ▶ 경영진의 퇴진시 투자자의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구조조정 차질초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식에 대한 Contingent plan을 제시했는데, 먼저 세무추징의 최소화를 위해

- ▶ 분식유형별 세무상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 가공자산 사용출처에 대한 증빙 등의 정리
- ▶ 상기 부분의 정리를 통한 회사 및 대주주의 세무부담의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로 부티의 문제제기에 대한 회피를 위해 회사 분식의 주요인이 매출채권의 과대계상과 비용의 누락을 통한 것으로 향후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점차적인 공시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향후 Workout 등 부채구조조정에 참여시 분식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제안했다. 향후 Workout 등 부채구조조정계획이 추진되는 경우 회사의 분식부분은 대부분 cash 관련 계정으로 이에 대한 open이 필요할 것이며, Workout 등에 대한 실사시점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모 회계법인이 제안했었다.

조양상선 발표용 실제 재무제표

조양상선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1997년		1998년		1999년	
	대외 공표용	실지자료	대외공표용	실지자료	대외 공표용	실지자료
유동자산	341,027	246,245	253,693	131,252	293,883	123,457
고정자산	307,230	307,230	172,395	172,395	359,556	359,556
자산총계	648,257	553,475	426,088	303,647	653,439	483,013
부채총계	1,027,466	1,027,466	853,425	853,425	557,475	557,475
순자산	△379,209	△473,991	△427,337	△549,778	95,964	△74,46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1997년		1998년		1999년	
	대외 공표용	실지자료	대외공표용	실지자료	대외 공표용	실지자료
매출액	918,264	918,264	1,236,127	1,236,127	1,089,493	1,089,493
매출원가	1,045,854	908,198	1,174,698	1,210,559	1,010,176	1,065,691
매출총이익	△127,590	10,066	61,429	25,568	79,317	23,802
영업이익	△162,925	△25,269	31,871	△3,990	46,079	△9,436
경상이익	△429,432	△153,157	△101,684	△123,662	△7,276	△57,11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29,432	△153,157	△46,680	△68,657	370,026	320,184

실제로 당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조양상선이 3자매각을 실행할 수 없었던 배경중의 하나가 분식회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과산하게 된 조양상선의 재무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모회계법인이 분석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조양상선은 1997년 이후부터 영업손실이 시현됐으며, 97년 이후 선박 등 자산매각으로 차입금을 상환했지만 영업 손실의 발생으로 회사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다.

조양상선 요약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특히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제1금융권의 단기차입금 및 제 2금융권의 융통어음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크게 늘고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현상까지 발생했다. 99년 자기자본의 증가는 자산재평가에 기인하며 실제 현금유입은 없었다.

조양상선의 경우는 저자의 활동영역인 만큼 분석회계를 하게 된 부실 배경까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동성 부족현상

과거 3년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조양상선은 IMF체제 이후 매출총이익의 저조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활동 만으로는 현금의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과거 3개년 현금흐름 현황분석에서도 영업활동의 현금부족분과 재무활동의 차입금 상환 자금을 자산의 매각이나 신규차입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매각자산이 없거나 신규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회사의 현금부족분을 보전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차입금 상환 Schedule을 보면 2000년도 11월과 12월에 1,822억 1,400만원의 차입금을 상환(제 1금융권의 당좌차월 및 제2금융권의 융통어음이 Revolving 된다고 보았을 경우 상환금액은 약 71,112 백만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상환 자금을 추가적인 자산매각이나 신규 차입금의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경쟁회사 분석(1999년 12월 31일 기준)

조양상선은 전체비율에서 경쟁사보다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어, 산업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익성, 안정성 비율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손실의 발생 및 높은 차입금의존도에 따른 금융비용의 가중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양상선 부실원인 분석

-차입금 상환 위한 자사선박 매각

조양상선은 1990년대 초 약 1,800억원의 자금(회사자금 : 36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 1,440억원)으로 자사 선박 7척을 건조했다.

그러나 1997년말부터 시작된 국내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등의 침체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BIS 비율 준수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 압박으로 회사는 자사선박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해운시장의 영업특성상 대형자사선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선위주 영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자구계획으로 인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영업손실로 인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차입금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재무적인 악순환 및 유동성 부족현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무리한 공동운항(얼라이언스) 노선 시행도 회사를 압박했다.

무모한 초기투자

세계일주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설항로의 기본 영업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비, 그리고 선박·장비의 추가 확보에 따른 투자비 증대, 글로벌 체제 확립을 위한 본사-지역본부-대리점-선박-항만-내륙 물류기지 등을 연결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영업 기반구축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공동항로 운영의 비탄력성

공동선사내 회사 영향력 미약 및 공동운항 약관 등에 따라 적자노선 조기 폐쇄 및 흑자노선으로의 선대 재편성 등과 같은 항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동항로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용선선박의 비중이 증가해 원가가 상승했다.

물류비용 부담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세계일주항로 운항을 시행한 결과 장비관리, 항만관리, 용선관리 및 대금수금관리 등 영업전반에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며, 외형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에 따라 이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동운항에 따른 초기투자를 금융기관차입금에 의존함에 따라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동항로 관리부문에 집중할 투자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쟁회사분석표

5. 경쟁회사 분석)199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 회)

구분	회사(+)	현대상선	한진해운	경쟁업체 평균	산업평균(**)	
안정성	유동비율	22.48	98.64	92.04	95.04	85.14
	부채비율	△748.66	181.54	459.54	320.54	385.08
	이자보상비율(***)	△1.23	1.64	1.19	1.42	1.50
	차입금의존도(***)	자본잠식	29.62	24.48	27.05	48.87
수익성	매출액총이익률	2.18	8.62	10.52	9.57	9.58
	영업이익률	△0.87	7.03	6.01	6.52	5.87
	경상이익률	△5.24	4.37	1.53	2.95	3.47
성장률	매출액성장률	△11.86	0.28	△2.26	△0.99	△2.5
효율성	매출채권회전률	12.45	6.17회	19.34회	12.76회	9.91회
	재고자산회전률	-	26.06회	11.12회	18.59회	16.07회
	1인당매출액(백만원)	2,223	1,014	1,198	1,106	

조양상선은 왜 법정관리를 받지 못했을까?

모회계법인이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출했는데, 결과는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파산법원은 조양상선을 살려두기보다는 청산시켰을 것이다. 청산가치가 2,208억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746억원에 불과했다.

이 회계법인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자산가치보다는 현시점에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현시점에서 청산이 채권자에게 유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정은 회사가 Workout, 법정관리/화의 신청시 실사기관으로부터 예상되는 평가이며, 채권단, 법원에서는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해 볼 때 회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회사에 대하여 청산으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행, 한아름중금의 채권회수율이 각각 76.21%, 56.93%에 이르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회사의 청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다 이 회계법인은 실질 재무제표를 토대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2004년까지 영업손실이 예상되며,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자금을 신규차입에 의존하게 되는 재무적인 악순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순수한 영업활동으로도 2003년까지 현금창출이 되지 않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46억 3,400만원의 순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적정 차입금 규모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6장 매출채권이 높으면 분식을 의심하라.

분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2002년 당시의 매출 1,000억원이상의 14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대비 매출채권(외상)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진해운의 매출채권비율이 2.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양상선 3.18%, 고려해운 3.57%, 거양해운 4.19% 등이 3%대를 기록했다. 삼선은 4.64%, 대한해운 5.01%, 동남아해운 5.61%, 범양상선 6.01%, 흥아해운 8.04%, SK해운 8.19%, 장금상선 9.47%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채권비율이 10%대를 기록한 업체는 남성해운 11.09%, 씨븐마운틴해운 14.68%, 현대상선 18.84% 등의 순으로 현대상선의 매출채권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매출채권(외상)이 많으면 그 만큼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중에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액으로는 현대상선이 8,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진해운 1,116억원, 범양상선 941억원, SK해운 908억원, 흥아해운 366억원, 씨븐마운틴해운 298억원, 대한해운 241억원, 장금상선 221억원, 동남아해운 205억원, 남성해운 145억원, 고려해운 143억원, 삼선 122억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1천억이상기업의 매출채권비율

원, %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채권비율
한진해운	4,522,061,995,815	111,625,082,760	2.47
대양상선	153,357,567,029	4,869,841,413	3.18
고려해운	401,557,440,410	14,315,926,407	3.57
거양해운	210,613,471,101	8,830,851,377	4.19
삼선	264,938,846,744	12,288,623,877	4.64
대한해운	482,232,852,637	24,138,615,985	5.01
동남아해운	366,679,867,156	20,557,770,973	5.61
범양상선	1,566,296,670,659	94,175,354,059	6.01
홍아해운	455,921,721,786	36,636,594,523	8.04
SK해운	1,109,349,171,223	90,849,603,210	8.19
장금상선	234,053,786,789	22,158,441,103	9.47
남성해운	131,234,479,598	14,550,377,825	11.09
세븐마운틴해운	203,524,063,552	29,883,450,560	14.68
현대상선	4,628,910,405,384	872,284,804,514	18.84

미수금(사업목적이외의 매출채권)을 제외

제6장 기타 분식회계 사례

- 코오롱TNS 분식회계 사례
- 충남방적의 분식회계 사례
- 제3장 하이닉스 분식회계
- 대한항공도 분식회계 ‘고해성사’

지금까지 SK해운과, 조양상선 등 해운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으나 이들 외에도 분식회계 적발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 진도 등 12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무더기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적발된 진도, 동산C&G 등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 해임권 고상당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관련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인 자네트시스템, 뉴런네트, 창흥정보통신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역외펀드 설립·운영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양메이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9개월과 임원해임권고상당 조치를 내리고, 코오롱과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했다.

또, 지난 2003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동아제약은 경고 및 감사인지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진도의 경우는 지난 99년 결산기에 해외자회사의 차입금인 보증채무를 인수하면서 손실 2,140억원을 회계처리에서 제외했으며, 이미 회수가 끝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산으로 처리해 13억 6,000만원의 매출을 부풀렸다.

진도는 또, 컨테이너의 재고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일반컨테이너를 2배 이상 비싼 냉동컨테이너의 취득단가를 적용해 102억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손실을 5,079억원에서 2,819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진도는 ▶채권금융기관간의 기업개선약정(2000.1.29)에서 해외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 2140억원을 회사의 주채무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2140억원의 보증채무인수손실을 과소계상했고 ▶이미 회수완료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산(매출채권)으로 계상해 13억 6,000만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으며 ▶ 컨테이너의 재고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일반컨테이너를 그보다 2배이상 비싼 냉동 컨테이너의 취득단가를 적용해 그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102억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 무보증 전환사채 79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기업개선약정에서 정한 이자율·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산정해 18억 2,500만원의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종합>

코오롱TNS 분식회계 사건(사건명 2003가합34293 손해배상(기), 2005년 2월 18일 판결선고)

허위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공시

(1) 이동보(코오롱TNS의 1인 주주이자 이사), 심완보(코오롱TNS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1998년경부터 계열사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할인 등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하여 코오롱TNS의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등 더 이상의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해, 2002년 1월경 코오롱TNS의 제33기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CP 할인을 비롯한 단기차입금이 899억 1,424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부채를 실제보다 808억 5,993만 원, 자산을 실제보다 193억 6,287만 원 각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48억 9,939만 원 과대계상해, 자산총계가 85,411,390,042원, 부채총계가 60,206,876,178원(이중 단기차입금 4,000,000,000원), 자본총계가 25,204,513,864원으로 된 허위의 대차대조표와 당기순이익이 367,171,223원으로 된 허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각 작성했다.

안건회계법인은 코오롱TNS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코오롱TNS의 제33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02년 2월 20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오롱TNS의 재무제표는 코오롱TNS의 2001년 12월 31일과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

코오롱TNS 직원의 요청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후의 중요한 사건으로 '코오롱TNS는 2002년 Korea-Japan World Cup(이하 '2002 월드컵'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내 라이선싱(Licensing) 사업 및 에스엘피(Self Licensing Programme : 자체 상품화권 사업) 사업(이하 '월드컵 휘장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한다)으로부터 획득해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TNS World'라 한다)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450 ~ 500여 품목에서 약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에 800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관광사업 및 외국인관광사업의 중국 관광객 운송사업 및 여행알선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가함으로써 기존 사업부에서도 높은 매출액 신장이 기대된다'라고 기재했다.

이동보, 심완보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02년 4월 4일 이같이 외부감사를 거친 코오롱TNS의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시했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그 무렵 일반에 공시됐다.

충남방적 분식회계 사건(사건명 2003가합56514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05년 3월 24일)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충남방적'이라 한다)는 사류(絲類)와 직물의 제조·판매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0년대에 들어 동남아 등지의 저가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원가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던 차에 1992년 대전공장의 화재와 무리한 해외현지법인 설립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의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진행했으나 결국은 2002년 12월 12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충남방적의 분식결산의 내용.

충남방적은 1994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실제는 자산이 5,785억원, 부채가 2162억원, 자본이 3,622억원, 영업손실이 26억원, 당기순손실이 52억원임에도, 제품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자산이 5855억원, 부채가 2162억원, 자본이 3692억원, 영업이익이 43억원, 당기순이익이 17억원인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1995년 3월 23일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충남방적은 또한 1995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실제는 자산이 6180억원, 부채가 2684억원, 자본이 3496억원, 영업손실이 17억원, 당기순손실이 17억원임에도, 제품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자산이 6344억원, 부채가 2684억원, 영업이익이 76억원, 당기순손실이 84억원인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1996년 3월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분식회계

금융감독원자료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도 과거 분식(회계기준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하이닉스반도체의 1996~1999회계연도의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통보받아, 통보된 혐의사실을 중심으로 1999회계연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의 관련계정을 포함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및 외부감사인 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회계기준 위반 내용은 대부분 과거 발생한 회계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시점에서는 **과거의 회계기준 위반내용이 전부 해소됐다고 금감원은 당시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1999년 이전부터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조정하거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상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차기 이후로 계상하는 등의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99	'00	'01	'02
회계기준 위반금액(누계기준)	19,799	18,484	12,801	7,389

대한항공도 분식회계 고해성사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4월 20일 전자공시를 통해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미착품 잔액 889억원중 477억원이 과대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2004년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반영한 2004년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같은 사안을 추가적인 확인으로 242억원 미착품이 자산의 실재성이 증명되지 않는 자산과대 건임을 확인했다면서 과거분식을 한국 기업사상 처음으로 실토했다. 미착품 잔액은 재고자산의 일부로 해외에 항공기 부품 등 물건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고 한다.

제8장 분식회계의 교훈(시사점)

투명한 기업은 표류하지 않는다.

이미 파산했지만, 조양상선의 경우처럼 부실회계를 한 경우 3자매각이든 법정관리든 회생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파산의 원인이 비록 부실회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도산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용 자료와 실질 재무제표가 다르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이며, 기업이 장수하는데 결코 보탬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든 정당하지 못하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스스로 수정한다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으로 보인다.

조양상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전에 3자매각, 화의와 법정관리신청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당시 이 회사의 경영컨설팅을 담당했던 모 회계법인의 지적대로 1704억원이라는 분석이 드러날 경우 3자 매각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분식을 파악한 파산법원이 '회생'시키는 것보다 나중에 분식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사회 경제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청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는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에 달려있으며, 생사여탈권을 권 쪽에서 ‘살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양상선이 청산선고를 당할 당시 회사측에서는 할인율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쪽에서 ‘분식’을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회사측은 분식문제가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조용히 ‘청산’을 수용했고,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양상선의 사례는 분식회계로 인해 희생의 기회를 놓쳐버린 적절한 케이스다.

2002년 하반기이후 현대상선의 대북 지원의혹과 관련해 단기차입금명세서에 상당 금액을 누락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상선의 단기차입금 누락건은 '분식회계'로 사태가 악화됐다.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현대상선이 2000년 6월말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좌차월(대출)받은 4,000억원중 3,000억원이 누락되고, 2000년 12월말 현재는 2,700억원이 누락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현대상선은 2003년 4월 대북송금 ‘특검’, 그해 8월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이 자살하는 등 대외외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됐으며, ‘부실과 분식기업’이라는 오명으로 기업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현대상선은 2004년 회계연도에 모든 부실을 털어내고 클린컴퍼니로 탈바꿈하면서 분식회계문제는 완전 해소했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현대그룹이 정상화되기 까지 수년간 겪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은 투명회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분식회계는 이처럼 해당기업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투자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게 된다.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기업이나 그룹의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도 파급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

투명한 회계는 투명한 경영의 시발점인 만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계에도 투명한 회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의 경우는 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지시를 따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반드시 뛰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99년 7월 대우사태와 2003년 카드채 대란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은 한국경제계에 엄청난 폐악과 함께 국제신인도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